

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[별표 3의2] <신설 2022. 6. 22.>

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(제23조의2제1항 관련)

위치	특별시	광역시	특별자치시, 도 및 특별자치도
사회복지관의 직원 수	19명 이상	13명 이상	12명 이상

비고: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여건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사회복지관의 직원 수를 위 표에 규정된 직원 수보다 많이 정할 수 있다.